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상이군경이"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를 면제 받고자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 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별 지]

등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